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4월 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12일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

나. 제안이유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유튜브, 1인 방송과 같은 뉴미디어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디어 창작 체험을 지원하는 “구미형 미디어 허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복합문화시설 드림큐브 인근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여 공연문화와 영상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도모하고자 함.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 예산 사정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어 공간 매입을 취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취득재산】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원평동 964-451 (드림큐브 인근)
- 규 모 : 연면적 730㎡ (대지 18,482㎡, 건축면적 365㎡)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총사업비 : 3,200백만원 (도비 2,080 시비 1,120)
 - 건축비 : 2,650백만원 / 기자재비 : 550백만원
- 주요시설 : 예술영화관, 영상·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제작실
등 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현황
 - 2019. 02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9. 10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경상북도)
 - 2020. 12월 : 도시재생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
 - 2021. 02월 :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 결재
 - 2021. 03월 : 공유재산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1. 04월 : 설계 공고
 - 2021. 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11월 : 공사 일상 감사 및 원가 심사, 조달 발주 및 계약
 - 2021. 12월 : 공사 착공
 - 2022. 06월 : 공사 준공 및 개관

【취득취소재산】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

- 위 치 : 구미시 금오시장로 12
- 대상지번 : 원평동 1032-5, 1032-6, 1032-62 (총 3필지)
- 면 적 : 건물연면적 4,443.88㎡, 대지면적 1,761.2㎡
- 기준가격 : 5,112백만원
 - 토 지 : 1,415백만원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1,497백만원 (시가표준액)
 - 기 타 : 2,200백만원 (당초 리모델링 공사 비용)

라.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현 명 숙

- 본 관리계획안은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 2차 관리계획 대상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등 2건임.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은

- 청소년을 주요 이용층으로 삼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편집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뉴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드림큐브와 연계한 공간 구축을 통해 공연 문화와 영상 문화의 연계 진흥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센터의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는

- 2020년 5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의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매입을 의결하였으나,
- 2020년 9월 제2회 추경예산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같은 해 10월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공간 매입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